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 서식 등을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를 확대 및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나.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안 제8조, 제8조의2)

- 공장의 지방 이전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공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별지 제8호서식)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과 에너지자원 보관·공급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 “포함한다)이”를 “포함한다) 합계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것(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석탄, 석유, 천연가스, 증기, 냉방 공기 등 에너지자원의 보관·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제4항 전단 중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를 “등은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증설의 경우 증설 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법인	①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⑥ 중소기업 여부 [] 여 [] 부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가.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명세

⑦ 근무지 자치단체	⑧ 생년 월일	⑨ 성명	⑩ 상시 근로자 (Y/N)	⑪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작일 (YYYYMMDD)	⑫ 근로계약 체결일 (YYYYMMDD)	⑬ 근로기간 (YYMM~YYMM)	⑭ 1년 이상 근무(Y/N)

나. 세액공제액 계산

⑮ 구분	⑯ 인원 수	⑰ 1인당 공제금액	⑱ 세액공제액 (⑯ × ⑰)
⑲ 중소기업		70만원	
⑳ 중소기업 외		45만원	
㉑ 세액공제액 합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1부. 2.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1부. 3.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⑦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본 · 지점(사업장 등 포함)의 자치단체명을 적습니다.
-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 ⑪ 상시근로자가 해당 근무지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시작일을 적습니다.
- ⑫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⑭ 1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상시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법 제54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1. <u>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말한다) 1부</u> 2. <u>영 제27조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 대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1부</u> 3. <u>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1부</u> 4. <u>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표(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u>	<u><삭 제></u>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신 설>

<신 설>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과 에너지자원 보관·공급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 ----- 포함한다) 합계가 -----
-----. <후단 삭제>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 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것(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석탄, 석유, 천연가스, 증기, 냉방 공기 등 에너지자원의 보관·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생략)

④ 법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

③ (현행과 같음)

④ -----

----- 등은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증설의 경우 증설 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다.

⑤ · ⑥ (생 략)

<신 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2